##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7판 개정전후대비표

## 〈지침관리팀〉

쪽	현행(3-6판)	3-7판 개정(안)	개정사유
4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화석액 준비(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7)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흔합 금지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생합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금지함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 -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실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⑤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L 소독 시 주의사항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안 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② 환경소독제 시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희석배울,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분임 7)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점(환경부)」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개정사유 (지침관리팀)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을 금지하여 용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관련 법령 명시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에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 -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⑥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쪽	현행(3-6판)	3-7판 개정(안)	개정사유
6	[소독과 관련된 주요 고려 사항]  ① 시설(건물)의 내부 환경표면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분사하거나 분무 및 훈증 등을 일상적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소독 시 금지  - 1차 표면소독으로 비효과적이며 안전상의 위해요소 유발(눈, 호흡기, 피부 자극)  ② 실외 공간(거리, 시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균 사열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방법 금지(소독제는 유기물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먼지, 오물 등 유기물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아닌 곳은 효과가 떨어짐)  ③ 소독 터널, 캐비넷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  - 병원체의 비달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④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의 표면소독 방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음  ⑤ 연무, 훈증 및 광범위 분사의 경우 1차적 표면소독의 방법으로 금지, 고려해야 할 안전상의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어 사용시 반드시 제조사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적용할 것  [관련근거]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 (15 November 2021)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 /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nvironmental surfa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소독과 관련된 주요 고려 시항] ① '언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② 실외 공간(거리, 시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균 사멸을 위해 소독재를 분무, 분사하는 방법 금지(소독제는 유기물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먼지, 오물 등 유기물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아닌 곳은 효과가 떨어짐) ③ 소독 터널, 캠비넷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 ─ 병원체의 비밀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중상, 메스꺼운, 구토 등의 중상이 나타날 수 있음 ④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의 표면소독 방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음  [관련근거]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 (15 November 2021)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nvironmental surfa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지침관리팀)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을 금지하여 용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관련 법령 명시
		│ Ⅲ. 환경 청소 및 소독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지침관리팀)

소독재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금지함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닦는 방법 사용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8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임병예방법」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을 금지하여 용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관련 법령 명시

쪽	현행(3-6판)	3-7판 개정(안)	개정사유			
[붙임]						
26	Q12. 환경소독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은 제품 내 '표시 사항'에 신고·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 시에는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칭'에서 목록을 확인한 후 (신고·승인 번호 확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12. 환경소독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은 제품 내 '표시 사항'에 신고·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 시에는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칭'에서 목록을 확인한 후 (신고·승인 번호 확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 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합니다.  - 또한 소독업자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방역용 소독제만 써야합니다. 신고된 살균 제,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받은 의약품, 동물용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합니다.	(지침관리팀)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을 금지하여 용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관련 법령 명시			
27	Q16. '환경 표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집을 청소하고 소독할 때 구역과 물건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하나요?  ○ 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 내 공간과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문 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합니다.	Q16. '환경 표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집을 청소하고 소독할 때 구역과 물건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하나요?  ○ 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주택 내의 물체 표면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문 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합니다.	(지침관리팀) 1쪽의 적용 범위와 일치시키고, 공간이 라는 애매한 용어 삭제			
28	Q17.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하나요?  ○ 예.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본문 III. 환경 청소 및 소독 중 2. 세탁방법 참조).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Q17.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하나요?  ○ 예.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본문 III. 환경 청소 및 소독 중 2. 세탁방법 참조).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침관리팀) 소독제 용도(물체 표면 소독용)에 대한 의미 명확화			
29	Q25. 실내 공간의 공기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나요?  ○ 실내 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포름알데히드, 염소계 물질 또는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의 소독제를 분무/분사 방법은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지합니다.	Q25. 실내 공간의 공기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나요?  ○ 실내 공간에서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는 흡입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시 인체의 건강에 약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용도(표면소독 등)에 맞게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 적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침관리팀)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을 금지하여 용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관련 법령 명시			